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595
----------	-------

발의연월일 : 2026. 9. 28.

발 의 자 : 정태호 · 이연희 · 김주영
이광재 · 김태년 · 이주희
안도걸 · 정준호 · 정일영
이수진 · 김남희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일정 금액의 15퍼센트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및 장애인활동지원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등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환자를 위하여 간병서비스를 이용하고 실제 간병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반적인 간병인에게 지급한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간병이 필요한 가구의 실질적인 의료·돌봄비 부담을 세제상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고령화와 가족구조의 변화 등으로 가족이 직접 간병을 담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증가하고 있고, 장기간 간병이 필요한 가구의 경제

적 부담도 커지고 있는 만큼 실제 지출한 간병비에 대한 세제지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병비를 지급한 경우 연 500만원을 한도로 그 금액의 15퍼센트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이나 보험금 등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간병이 필요한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2항제5호 신설 등).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료비”를 “의료비 또는 간병비”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해당 거주자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간병비 중 다음 각 목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 다만, 그 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500만원으로 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금액

나. 보험금이나 그 밖에 보전받은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간병비를 지급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① (생략)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① (현행과 같음)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u>의료비</u> 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15(제3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제4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 ----- ----- ----- -----의료비 또는 <u>간병비</u> ----- -----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u><신 설></u>	5. <u>해당 거주자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간병비 중 다음 각 목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 다만, 그 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500만원으로 한다.</u> <u>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금액</u> <u>나. 보험금이나 그 밖에 보전</u>

③ ~ ⑪ (생략)	<u>받은 금액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금액</u> ③ ~ ⑪ (현행과 같음)
------------	--